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12563 법인소득지방세 환급의 청구
원고, 항소인	회생법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1011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0.
판 결 선 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에 소득은 발생되었으나 전액 면제되어 과세된 법인세가 없는 회생법인 A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어 납부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한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회생법인 A가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든 증거들과 관계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결손금공제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는데, 법인세법은 종래 당기의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방법만을 허용하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시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한 점, ②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반드시 그 방법을 택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하고 이월공제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점, ④ 법인지방소득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⑤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그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월공제의 방법에 비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종의 시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상의 평등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회생법인 A와 같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월공제의 방법으로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데(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인정하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았음에도 그 과세표준에서 다시 결손금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회생법인 A가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최한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판사 이흥주